

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채인묵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07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01월 21일
발 의 자 : 채인묵 의원(1명)
찬 성 자 : 권영희, 김 경, 김기대,
김태수, 김희걸, 박상구,
이병도, 이영실, 이준형,
최 선, 홍성룡 의원(11
명)

1. 제안이유

- 2011년부터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,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로 인한 청소년 사망이 매년 줄어드는 것과 달리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. 또한 ‘서울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’(2021년 12월 발표)에 따르면, 청소년 4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자살 생각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하여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음.
- 또한, 교육청의 ‘학생 정신건강증진 종합 계획’은 정신건강 증진 조기 발견 및 선제대응을 위해 ‘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’를 운영하고 있으나 특정시기에만 검사가 실시되고(초1-4, 중1, 고1, 특수, 각종학교), 학교 밖 청소년은 배제되고 있어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.
- 따라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 지속적 관리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하며, 청소년이 원하는 경우 상시적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함.

2. 주요내용

가. 청소년 정신건강의 체계적 지속적 관리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개발 실시토록 하고 상시적인 정신건강 상태의 측정과 검사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(안 제14조의3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청소년기본법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3(청소년 정신 건강을 위한 조치) ① 시장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·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신건강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증진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상시적인 정신건강 상태의 측정 및 검사
2.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
3.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홍보
4.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양성
5.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14조의3(청소년 정신 건강을 위한 조치) ① 시장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·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신건강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증진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상시적인 정신건강 상태의 측정 및 검사 2.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3.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홍보 4.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양성 5.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문서번호

2022011900000002

미첨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채인묵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
이정수 팀장
류동균 주무관

접수일 : 2022.1.19

회신일 : 2022.1.20

내용문의 : 02)2180-7952

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의3의 청소년 정신건강의 체계적·지속적 관리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개발·실시토록 하고 지원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
 -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는 아동·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(아이존) 사업을 통해 같은 조례안 제14조의3 제2항 1호, 2호, 3호, 5호를 기 추진하고 있음(붙임1 참조)
 - 또한, 5호에 포함된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사항에 대한 사항의 전체를 포괄할 수는 없으나, 서울시 교육청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등 3개 부서가 유사 사업을 추진중으로 별도로 추가적 비용추계를 하지 않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: 500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23)	2차년도 (2024)	3차년도 (2025)	4차년도 (2026)	5차년도 (2027)	합계
세입	전문가교육프로그램 세입	-	-	-	-	-	-
	소계 (a)	-	-	-	-	-	-
세출	전문가교육프로그램 세출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	소계 (b)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□ 총 비용 (b-a)	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
○ 비용추계 대상

-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양성비(같은 조례안 제14조의3 제2항 제4호)

○ 비용추계 전제

- 비용은 2022년도부터 발생하고,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가정
- 물가상승을 미반영

○ 비용추계 방법

- 같은 조례안 제14조의3 제2항 제4호의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양성 비용을 추계함

○ 비용추계 내역

-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연간운영비
= 100,000천원
- ※ 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관할의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단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비용 참조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조도형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분석관(주무관)	류동균

☎ 02)2180-7952
e-mail : rooster72@seoul.go.kr

붙임1 기추진사업 세부 내역

사업명 : 아동·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(아이존) 운영)

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(연례반복)
- 지원대상 : 만 6세 이상 정서행동문제, 발달장애 문제 가진 학생(특재 계층 및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을 우선)
- 규모 : 아이존 9개소 ※ 정서행동 8개소, 발달장애 1개소
- 사업내용
 - 정신건강문제아동에게 전문적이고 다학제적인 프로그램 제공
 - 개별 및 집단 프로그램(놀이·음악·미술·인지·학습치료 등)
 -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(부모상담 및 심리상담 등)
 - 신규 아이존 공모
- 소요예산 : 3,788,722천원(전액 시비)

예산(안) 총괄

(단위 :

천원)

구 분	2021년		2022예산(안) (B)	증감 (B-A)	(B-A)*100/ A
	본예산	최종예산 (A)			
계	(x-) 4,425,712	(x-) 4,425,712	(x-) 3,788,722	(x-) △636,990	(x-) △14
사무관리비	(x-) 2,000	(x-) 2,000	(x-) 2,000	(x-) 0	(x-) 0
사회복지시설법 정운영비보조	(x-) 3,993,640	(x-) 3,993,640	(x-) 3,414,722	(x-) △578,918	(x-) △14
사회복지사업 보조	(x-) 430,072	(x-) 430,072	(x-) 372,000	(x-) △58,072	(x-) △14

예산(안)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1년 본예산	2022년 예산(안)
사무관리비	아이존 운영 평가회의 500,000원*4회 = 2,000천원	아이존 운영 평가회의 500,000원*4회 = 2,000천원
	증감사유	

